

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가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칙 제21조에 의거, 의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목표와 졸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설계원칙) 교육과정은 교육목표와 졸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교육과정설계원칙에 따라 구성한다.

- ① 일차진료의사 양성에 적합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 ② 핵심 바탕 자기 주도적 교육과정이 되도록 구성한다.
- ③ 교육내용의 연계성을 고려한 수평-수직통합이 되도록 구성한다.
- ④ 임상실습의 연계성을 고려한 학과 간 통합이 되도록 구성한다.
- ⑤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 되도록 구성한다.
- ⑥ 교육과정은 필수와 선택으로 구성한다.
- ⑦ 인문사회의학이 강화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제3조(교육과정구성) 교육과정은 교육목표와 졸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구분하여 시기성과를 개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예과 과정, 기초-임상 통합교육과정, 선택과정, 문제바탕학습, 의무석사논문작성과정, 환자·의사·사회, 임상의학입문, 통합임상실습과정, 학생주치의 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① 시기 1(Phase 1, 의예과 과정)은 기초과학, GAEA(Gachon Enrichment & Achievement), HMS(Human-Medicine-Society)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의학에 필요한 기초교양, 기초과학 지식, 인문사회의학 소양을 함양할 목적으로 운영한다.
- ② 시기 2(Phase 2, 기초-임상의학 과정)는 기초의학 총론, 기초-임상의학 통합교육, 선택의학, 문제바탕학습, 환자·의사·사회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기초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임상의학적 지식과 술기, 태도를 함양할 목적으로 운영한다.
- ③ 시기 3(Phase 3, 임상실습 과정)은 의학 지식과 술기를 실제 진료에 활용하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학생 진료능력 향상을 위한 임상실습 중심으로 진행하여, 임상증상 중심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 ④ 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은 전 시기에 걸쳐 운영하여 의료인으로서의 전문

직업적 소양 계발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제4조(교육과정 편성절차)

① 새로운 교과목의 개설과 기존 과정의 조정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시행된다.
가. 새로운 교과목을 개설하거나 기존 과정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과정의 실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담당 위원회에 안을 제출한다.

나. 담당위원회는 제출된 안을 심의 및 조정한다.

다. 조정안은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의해 승인된다.

② 전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자 할 때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시행된다.

가. 의전원장의 요청에 의해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개편안을 마련한다.

나. 개편안에 대해 의전원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체교수에게 의견을 수렴한다.

다. 교육기획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개편안을 마련한다.

라. 최종 개편안은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전원장이 총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교육과정운영) 교육과정의 책임교수와 참여교수는 아래와 같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① 기초의학 총론, 기초-임상의학 통합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가. 책임교수는 해당 과정의 수업편성, 진행과 평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나. 책임교수는 과정별 수업계획서, 단위시간별 수업계획서를 제출한다.

다. 책임교수는 과정 운영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한다.

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오전은 강의를 중심으로 하고, 오후에는 학습자가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시행한다.

마. 수업성과 또는 과정성과의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형성평가를 시행한다.

바. 책임교수는 과정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소한 1회 이상 적절한 평가방법을 통하여 과정 전체에 대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공식적인 시간을 할애하여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공한다.

② 통합임상실습과정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가. 책임교수는 해당 실습과정의 실습편성, 진행과 평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나. 책임교수는 해당 실습과정의 성과, 주요증상과 질환, 기본술기와 관찰술기, 세부일정, 평가방법 등이 기술된 지침서를 제출한다.

다. 실습이 종료될 때 마다 학생들에게 과정평가를 실시한다.

라. 책임교수는 해당 실습과정 운영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한다.

마. 외래 환자 중심의 실습이 이뤄지도록 한다.

바. 1, 2차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실습장소로 활용한다.

사.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전공의에게 교육자로서의 역할, 임무 등에 대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아. 평가는 실습과정에서의 수행을 기준으로 개인평가와 그룹평가를 한다.

③ 학생주치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가. 학생 주치의의 업무능력 개선을 위해 개인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한다.

나. 책임교수는 학생 주치의의 임무 또는 업무가 명확히 제시된 지침서를 제출한다.

다. 학생 인턴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한다.

④ 인문사회의학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가. 책임교수는 해당 과정의 수업편성, 진행과 평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나. 책임교수는 과정별 수업계획서, 단위시간별 수업계획서를 제출한다.

다. 책임교수는 과정 운영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한다.

라. 전 학년에 걸쳐 과정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마. 토론, 세미나, 발표, 그룹학습, 현장학습 등 학생들의 경험학습 위주의 다양한 교육방법을 사용한다.

바. 보고서, 그룹 기여도, 참여 참여도, 발표, 태도 등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⑤ 의무석사논문작성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가. 의무석사논문작성 과정은 3년 과정으로 운영한다.

나. 지도교수 선정을 위한 학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다. 의무석사논문작성 과정의 충실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라. 의무석사논문 계획서와 최종 결과물은 공개발표를 한다.

⑥ 기타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각 위원회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6조(교육과정평가)

- ① 교육기획위원회는 매년 시기성과와 전체 교육과정운영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평가한다.
- ② 교육기획위원회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목표의 적절성과 인지도, 졸업성과, 교육목표를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 ③ 책임교수는 매년 학생들의 수업 또는 임상실습에 대한 평가, 참여교수들의 과정에 대한 평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등을 종합하여 과정을 평가한다.
- ④ 책임교수는 과정성과 평가에 대한 자료를 의학교육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지원체계)

- 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관련 위원회, PBL 운영, 통합임상실습과정, 학생주치의 과정, 의료인문학 과정은 의학교육실이 지원한다.
- ② 기초의학 총론, 기초-임상 통합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원은 행정실 수업조교가 지원한다.
- ③ 의무석사논문지도과정은 행정실 연구부에서 지원한다.
- ④ 임상의학입문과 임상수행평가에 관한 지원은 의학시뮬레이션 센터인 ASK 센터에서 지원한다.
- ⑤ 의학교육실은 의학교육관련 교수개발 워크숍을 매년 일정 횟수 이상 개최한다.
- ⑥ 통합교육과정과 통합임상실습과정 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지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